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(PTSD)’의 발병 원인을 구체화하여, 직무관련성 판단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총리령 제 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6호나목 중 “충기사고”를 “충기사고, 직무수행·교육훈련·영내생활 중 사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 주요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(제4조제2항 관련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6. 정신질환 나. <u>충기사고 등의</u>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,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(P TSD) 진단을 받은 경우	6. 정신질환 나. <u>충기사고, 직무수행·교육훈련·영내생활 중 사고 등의</u>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,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(PTSD) 진단을 받은 경우